

의 안 번호	1602	【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2. 7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2. 11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2. 24.(월)

2. 제안이유

마을공방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억기반 소규모 관광업체간 연계로 네트워크 구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현황

위탁대상	운영사항	비 고
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	◦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◦지역관광 네트워크 운영	기존사업

- 나. 위탁기간: 1년 11개월(2020. 2. ~ 2021. 12. 31.)
- 다. 2020년 지원예산 예정액: 금50,000천원
- 라. 신청 자격: 울산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, 관광 및 문화 기획, 홍보, 콘텐츠 마케팅 등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사업체
- 마. 수탁기관 선정 방법: 공개모집
 - 1)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, 서류 및 면접심사
 - 2) 심사기준: 수탁자의 적격성,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

바. 추진일정

- 1) 위탁모집 공고: 2020. 2월
- 2) 신청접수: 2020. 2월
- 3)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: 2020. 2월
- 4) 위탁·수탁 협약서 체결: 2020. 2월

사. 주요 업무

사업 분야	세 부 내 용
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마을공방 공간 운영 ◦마을공방 프로그램 홍보, 참여 등을 통한 세대간 소통창구 활용 ◦플랫폼을 통한 지역 참여자 및 관광사업의 체계적 자료 구축 ◦방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채널 확대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」 제27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1항, 제5조, 제6조, 제7조

5. 검토의견

본 동의안은 중구 관광 플랫폼과 연계하는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조례」 제27조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큰 거 법 규

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

제27조(관광진흥업무의 위탁)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관광객 유치
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,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
3.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
4.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, 양성 및 운영
5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, 방법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, 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-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,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, 관계공무원 3명, 당해전문가 6명 이내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해당 수탁기관 선정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-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